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97 | 2025.08.25 (2025.08.18~2025.08.24)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회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을 개최하여 업계의 사업재편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의 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립 시 창업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지위가 승계될 수 있도록 창업 인정 기준을 완화·확대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사모펀드의 공시·보고의무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AIFMD를 참고하여 강화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 및 레버리지 한도 등을 명확히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

발행인의 등록 요건과 준비금 보관·관리 의무, 발행·상환 절차와 공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내 거래지원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며,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시장을 조성하려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21인)」,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있어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최저한세액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의원 등 11인)**」,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인재를 육성·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공지능인재를 양성하기 위한「**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대식의의원·김준혁의원 등 13인)**」,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벤처 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기금을「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기존 10%에서 15% 이내로 확대하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하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을 의료기기 전체로 확대하는「**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의원 등 12인)**」,

노동분쟁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과 노동관계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김형동의의원 등 10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명시하는 한편, 무상할당비율을 50% 이내로 한정하여 이행연도별 목표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상쇄배출권은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공법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하는「**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안전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8.27.(수) 14:00 개최될 예정이며,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및 <예결위> 등에서 결산과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 발표(기획재정부) 7
-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 체결(산업통상자원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10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0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0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1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2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2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3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소방청)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 1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14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15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21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3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3인) 1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17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20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0
•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대식의원·김준혁의원 등 13인)	21
•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21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4인)	22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4인)	22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2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23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24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24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25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5
•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김형동의원 등 10인)	2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6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8인)	27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27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	28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3인)	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중국] 중국 하이난성(海南省) FTP(Free Trade Port)의 나비효과와 시사점
- [지적재산권] 2025년 개정 특허법상 외국인도수출과 그 특허침해 가능성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8. 6. - 2025. 8. 19.)
- [건설/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 발표 - 간접노무비 상향 등 안전관련 비용 현실화, 적정 공사비 반영을 통한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 지원, 중대재해 발생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화 - '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 연간 3조원 수준 공공구매 확대, 혁신제품 보증 특례 도입('25.9월) 등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도 공세적으로 확대	2025-08-20
-------	--	------------

기획재정부는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②**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음

1.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번 개선안은 입찰, 낙찰자 평가, 계약 이행 등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공사비 상승과 경영 부담 속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기업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힘

먼저, 입찰 및 낙찰자 선정시 안전 평가 반영, 기업의 안전 관련 비용 확보, 계약상대자의 공사중지권 보장 등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함. 우선, 현재 제한경쟁 입찰 사유로 시공능력 등 11가지 항목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전 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상태를 추가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제한 경쟁을 통해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함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 평가를 강화함. 우선,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시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함. 그리고,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의 품질 안전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시공평가 항목을 종래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제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원) 사업에도 도입함. 그리고,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종래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평가를 배점제로 전환할 계획임

더 나아가, 현장의 안전 관리 조직 및 인력 확대, 안전장비 및 시설 구축, 구조적 안전성 점검 등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등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비용의 적용 기준 상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한편, 현 기준도 준수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예규를 정비함

기업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 행정비용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도 촘촘하게 마련하였음. 시공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함. 또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국가공사 기준 10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을 상향(+2%p)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한편,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도 향후 추진키로 하였음. 아울러, 기술입찰 유찰시 기본 실시 설계기간 동안의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임

위와 같은 전반적 안전 관리 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함대로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시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시에도 제한하는 한편, 제한 기간 확대, 반복적인 사고 발생시 가중처벌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2.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방안

정부는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30년까지 연간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3조원 수준('24년 기준 10,220억원)까지 확대하고, 혁신제품도 5,000개('25.6월 기준 2,508개)까지 추가 발굴·지정할 계획임

이를 위해 정보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기기업에 조달시장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활성화하고, 융복합 기술제품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물품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를 효율화함

또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지정대상을 기존 벤처·창업기업에서 청년·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으로 늘리고, 올해 말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관을 16개에서 18개로 확대할 계획임. 혁신제품 지정 심사 방식도 그간 공공성(매출) 심사 이후 혁신성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단축·효율화하고, 기업 신청 혁신제품 지정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함. 이와 함께 초기 혁신기업이 생산자금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도 2025년 9월 중 도입함

우수제품 지정시에는 'AI 분야'를 신설하여 별도로 심사할 계획이며, 고가의 장비나 첨단 제품에 해당하는 우수조달물품 판로확대를 위해 임대(구독) 방식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25년 시행)하였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임

마지막으로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제도(G-PASS)를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임

산업통상자원부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 체결

-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민관이 함께 본격 시동
- 무임승차 기업은 단호히 대응

2025-08-20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에서 업계의 사업재편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의 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밝혔음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밝히고,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대 원칙’을 확정한 바 있음

오늘 협약식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발맞춰 석유화학 업계 스스로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힘

협약식에서 석유화학 업계는 산업계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70~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 감축,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이번 자율협약을 토대로 석화기업들은 설비 감축·고부가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음

정부는 향후 업계에서 제출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필요한 금융, 세제, R&D, 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할 예정임.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재편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임

특히, 산업부는 지역경제 및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지난 5월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산시도 추가 지정을 검토 중임. 또한, 고용부는 최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하여, 8월 1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여수시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앞으로 여수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한 요건 및 수준을 달리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산업부는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편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강조하며,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기업들도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진정성있게 노력한다면, 정부도 그에 상응해 뒷받침하는 「先 자구노력 - 後 정부지원」의 원칙을 강조하며, 책임있는 자구노력 없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려 하거나, 다른 기업들 설비 감축의 혜택을 누리려는 무임승차 기업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행정안전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8-19 시행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서식 및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에 드는 기간을 정하는 한편,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8-18 시행
---------	--------------------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중 주요시설에 포함되는 공장의 범위에서 제조에 이용되는 공장 전체가 제외됨을 명확히 하며,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상 우선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대시설인 일반업무시설 중 특히 오피스텔은 공동집배송센터 종사자의 업무·주거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8-19 시행
---------	---------------------------	---------------

종전에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압류한 석유제품을 세무서장 등 행정기관이 매각하는 경우 석유판매업자는 해당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압류한 석유제품을 세무서장 등 행정기관이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석유제품을 석유판매업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압류된 석유제품의 원활한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8-19 시행

이식에 사용되지 못하는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라도 임상연구 등에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추가하고, 제대혈은행이 부적격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승인 요청 시 제대혈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또는 치료 관련 실시계획에 대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합 통보서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5-08-21 시행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거나 선박을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전환하는 조선업자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등의 신청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8.18. ~2025.08.19.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tel:044-215-4331)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8.18. ~2025.08.19.
-------	-------------------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tel:044-215-433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8.13. ~2025.09.22.
---------	-----------------------	-----------------------------

종전에는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창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은 추후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과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업 모델 또는 회사 형태의 변화가 빈번한 창업 현장에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음

이에, 설립 시 창업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지위가 승계될 수 있도록 창업 인정 기준을 완화·확대하여,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전화: 044-204-7622, 팩스: 044-204-7639\)](tel:044-204-7622)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8.13.
~2025.09.2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60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위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

소방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8.18.
~2025.09.29.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도급자 중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소방시설설계 용역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간을 설계 용역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문의처 : [소방청 소방산업과](#) (전화: 044-205-750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	2025-08-18 발의
-------	---	---------------

현행법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사모펀드를 다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하여 투자자 보호 및 감독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있음

2021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설명의무 및 감독기관 보고의무가 일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높은 레버리지를 동원하여 기업을 인수한 후 재산을 유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통제하거나 사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회원국이 그 내용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유럽연합의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은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여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사모펀드 전반에 걸쳐 보고의무 및 공시의무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또한 EQT AB, CVC 캐피탈 등 유럽의 사모펀드들은 연례보고서 및 주요 운용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투자자 및 일반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하고 있음

이에 사모펀드의 공시·보고의무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AIFMD를 참고하여 강화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 및 레버리지 한도 등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사모펀드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2025-08-19 발의
-------	--------------------------------------	---------------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과 청약의 철회, 위법계약의 해지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상호금융업권 중에서는 신용협동조합만이 이 법을 적용받고 다른 상호금융업권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업권 내 규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정무위원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2025-08-21 발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활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이를 통한 결제, 송금,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발행인의 준비금 보관, 상환 의무, 정보공시, 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등 세부 규율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적체계를 구축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외 발행 자산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상황에서도 이용자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명확한 규율 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행인의 등록 요건과 준비금 보관·관리 의무, 발행·상환 절차와 공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내 거래지원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며,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시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규정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을 제고 하려 함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2025-08-22 발의

최근 해외 직구의 일상화와 개인 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 등 디지털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B2C)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새로운 거래 유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 간 거래(C2C)에 대한 규율 체계를 신설하여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국내 소비자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는 이용후기의 삭제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여 후기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기 위해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규모의 확대 등 변화된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디지털 거래환경에 맞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분쟁 예방과 피해 구제를 신속히 실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21인)

2025-08-18 발의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 역량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3인)

2025-08-18 발의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금융중심지 등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내국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하여 세제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 제18조의3,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1)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2025-08-18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비용의 일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앞세워 자국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가 없어 타국과의 가격 경쟁 등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있어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최저한세액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하여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함 (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3인)

2025-08-19 발의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국내 자동차 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이번 관세 조치는 완성차 및 부품업계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 전반에 수출 감소,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하여, 경쟁력 저하는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국내적으로는 반기업 입법 추진으로 인한 노조의 파업 빈도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은 해외 바이어 신뢰도 저하, 장기계약 축소, 해외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등으로 이어져 산업 공동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함으로써 한국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높이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025-08-20 발의

현행법에서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서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은 현행법에 따른 전체 법정기금 중 일부에 불과하며 기금 자산 중 10% 이내의 범위에 국한하고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함. 더욱이, 법정기금의 여유자금만 1,400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경제를 이끌어 나갈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미진하여 법정기금이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을 세우고,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81조)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5-08-20 발의

지난 2022년 당시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를 우려하여 부자 감세 기조에 반대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는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하향하였음

이에 지난 2022년 103조 5,700억 원에 달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 4,200억 원, 2024년 62조 5,000억 원으로까지 감소했고, 이와 연계되어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에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완화로 유발된 부자 감세 정책 이전의 법인세율 기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조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임 (안 제55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025-08-21 발의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수 중 수도권 사업체 수는 291만 7,926개로 수도권 사업체 비율은 전체의 46.8%를 차지하였음. 특히, 부산상공회의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1천대 기업 중 무려 749곳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음. 매출 순위 100위 내에도 서울 소재 기업이 78개사에 달하는 등 기업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수준임

또한, 한 민간 구인 구직 플랫폼의 지역별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신입 혹은 경력 3년 이하 직원을 채용하는 약 6만개의 기업 중 소재지가 서울인 곳은 2만7천164개로 약 45.4%에 달하고 이어 경기도와 인천이 1만6천 372개, 3천635개로 각각 27.4%와 6.1%를 차지하여 전체 채용공고 중 서울과 경기, 인천이 78.9%에 달함. 반면, 부산·충남·대전·경남·대구·충북 등의 비수도권 지역은 전체의 약 1.7%에서 3.2% 수준에 불과함.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 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조사 대상의 50.5%가 ‘인력 확보’를 꼽기도 했음

이와 같이 비수도권 지역의 채용 여건의 악화는 제조업 등 지역 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방 중견·중소기업의 채용 여력 저하로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채용 여건을 지원할 필요성이 큼. 현재 2025년 일몰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서는 고용을 늘린 기업 및 청년, 가족 돌봄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일정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기업 규모별로 실시하고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의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및 일반 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수도권 지역보다 더 늘리고자 함 (안 제29조의8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025-08-21 발의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 및 기업 규모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가업을 이어나감으로서 기업의 영속성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임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3.6%는 현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국세·지방세 등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특히, 응답기업 중 10곳 중 6곳은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지방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며, 상속세 관련 혜택이 확대되면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음

이에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 등을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현행 가업상속공제 금액인 가업 영위 기간별로 300억 원에서 600억 원의 공제금에서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공제하여 주고자 함 (안 제18조의2제1항)**

다만,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본사 또는 주사무사가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도권으로의 재이전을 방지하고자 함 (안 제18조의2제5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5-08-21 발의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공제는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는데 글로벌시장에서 K-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제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게임콘텐츠분야의 경우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망산업으로 향후 콘텐츠 수출,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산업이나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현행 영상콘텐츠 관련 세액공제에 게임콘텐츠도 포함하도록 하고, 일몰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2025-08-22 발의

「법인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 중인 국제결제은행(BIS)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 중이므로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위하여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4항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025-08-22 발의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규모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일반 투자자들도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주식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자산 형성 및 기업 투자 장려 등을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와 실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3 신설)

교육위원회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대식의원· 김준혁의원 등 13인)

2025-08-20 발의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넘어 산업, 일자리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각 분야와 접목되는 핵심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인재의 확보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활용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인재를 육성·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공지능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2025-08-19 발의

종합 설계·감리업체가 소방 설계·감리를 포함하여 건설 등 여러 공종을 함께 일괄 도급받는 경우, 발주자의 미완공 상태에서의 사용승인을 위한 소방 감리에 대한 압박과 같은 불법·부당한 요구가 발생하였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가 원인이 된 대표적 사례로 지난 2월 발생한 부산의 대형 리조트 화재 사고가 있으며, 현행 제도상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더불어 일괄 도급에 따른 불공정한 입찰 환경이 조성되어 전문적으로 소방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위축 등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됨은 물론이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시공과 같이 건설, 전기 등 각 공종 간 수평적 관계로 견제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방 설계·감리 분야에도 건설, 전기 등 다른 공종의 설계·감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이로 인해 소방분야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모든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여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방 설계·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안전은 물론 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21조 및 제37조)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2025-08-20 발의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부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수익의 90%를 배당하며 임대주택 확대에 기여한다는 공공적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매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4인)

2025-08-21 발의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 주요 정보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4인)

2025-08-21 발의

현행법은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현황 공시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여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2항)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2025-08-19 발의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제정되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한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연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한류연관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지역 주민 대상 일자리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지역의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기반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류산업과 관련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2025-08-19 발의

최근 글로벌 해커 조직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해킹하여 간접적으로 산업기술을 침해하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산업기술 침해가 우려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어 보안의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안 제15조 및 제22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2025-08-20 발의

현행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고용보험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4개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를 토대로 한 민간투자 등을 이끌어내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기금 역시 법률 폐지 또는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비율 역시 기금운용자금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벤처 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기존 10%에서 15%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71조제1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2025-08-22 발의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활력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인하여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산업 위기는 지역경제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사업재편 추진을 위한 정부 역할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

이에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사업재편 권고, 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구성,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특례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8조 및 제8조의2 등)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2025-08-19 발의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하여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매한 의료기기의 대금결제를 미루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의료기기 유통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공급자 간의 특수관계 등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에 더해 「약사법」의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하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을 의료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등** 의료기기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안 제5조, 제18조, 제18조의6, 제31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53조의2 및 제56조)

보건복지위원회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025-08-19 발의

최근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동물대체시험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 있어 많은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또한 부재하여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화장품법」은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할 경우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시급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김형동의원 등 10인)

2025-08-19 발의

개별적·집단적인 노동분쟁 해결은 전통적 권리구제기관인 법원의 재판, 노동위원회의 심판·조정 등 공적 분쟁해결 시스템에 의존하여 왔으나, 집단적 노동분쟁 대비 개별노동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분쟁의 내용 및 유형이 복잡·다양화되는 노동환경에서 그러한 공적 분쟁해결 시스템만으로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런데 화해·조정 등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분쟁 해결방식은 처리기간의 단축 및 비용 절감, 결과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장 및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 활용에 따른 만족도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노동분쟁에 있어 민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을 정비해오고 있음

이에 노동분쟁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과 노동관계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5-08-20 발의

현행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현행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령은 적립금 운용방법 중 ‘증권’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으로 규정하고,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은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적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벤처캐피탈에 유입시켜 수익 다변화와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비상장주식에 대한 퇴직연금 투자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명문화**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으로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0조)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8인)**

2025-08-20 발의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기후소송 결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만을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국회에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 감축경로를 개선입법할 것을 주문하였음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감축목표의 필요최소조건에 따르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는 ①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②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③ 그 누적 배출량이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 즉 ‘탄소예산’을 산정하고 이를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이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가 감축목표의 필요최소조건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시 적용할 원칙과 고려사항에 명확히 규정하며,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2025-08-20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 할당 배출권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 및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온실가스 상쇄 배출권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계획기간(2021년 ~ 2025년)의 유상할당 비율이 10% 수준이고, 무역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이 무상할당을 주로 받아 실질적인 유상할당 비율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간 탄소배출 감축 노력과 탄소비용 지불 정도를 보정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수출중심인 우리나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부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명시하는 한편, 무상할당비율을 50% 이내로 한정하여 이행연도별 목표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상쇄배출권은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2조 및 제29조)

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

2025-08-22 발의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산업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공법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21조)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등 13인)

2025-08-20 발의

도심을 통과하는 물류철도 구간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및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열차의 안전운행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비산먼지 등 환경 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철도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의2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8/27(수) 14:00	- 안건 심의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8/25(월) 14:00	- 고유법 심사
		8/26(화) 10:00	- 결산 상정, 고유법 심사, 타위법 심사
	법안심사1소위	8/25(월) 15:00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정무위	예결산소위	8/25(월) 14:00	- 결산 심사
	전체회의	8/26(화) 17:00	- 결산 심사, 법안 상정
과방위	전체회의	8/26(화) 10:00	- 법안 상정, 결산 상정
국방위	전체회의	8/25(월) 14:00	- 결산 상정, 현안 보고
행안위	전체회의	8/27(수) 10:00	- 결산 상정, 법안 및 청원 상정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8/25(월) 15:00	- 결산 의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8/27(수) 10:00	- 결산 및 법안 의결
환노위	예결산소위	8/27(수) 10:00	- 결산 심사
예결위	전체회의	8/25(월) 10:00	- 결산 심사(종합정책질의)
		8/26(화) 10:00	- 결산 심사(종합정책질의)
		8/27(수) 10:00	- 결산 심사(부별심사 : 경제부처)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8/25(월) 15:00	(학생 건강과 시대 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백승아·송옥주 의원실	국회박물관 대강당
	8/26(월) 14:00	소버린·버티컬·피지컬 AI G3, 우리의 길은? : 국민의힘 정책토론회	최형두·신성범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8/26(화) 15:00	폐동맥 고혈압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지아 의원실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8/27(수) 18:30	관세 전쟁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 국회 직원경 제·외교 연구모임 NASA 특강	박지혜 의원실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8/27(수) 19:00	특별 강연 : 스웨덴은 높은 세부담에도 왜 기업인이 세무 공무원을 좋아하는가? : 스웨덴국세청을 통해 본 신뢰의 조건(제2강)	박민규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8/28(목) 14:00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2차	강득구·김주영 의 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8/29(금) 09:30	해상풍력사업, 환경, 인권과 조화로운 개발방향 모색 토 론회	박정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8/29(금) 10:30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국회 토 론회	김선민·신장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8/25(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6호(2025-16호) 발간	국회도서관	
	8/2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16호(통권 제279호) 발간		
	8/27(수)	「Data&Law」 제34호(2025-9호) 발간		
	8/27(수)	「금주의 서평」 제743호(2025-34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8/18(월)	「Data+」 제16호(2025-16호)	국회도서관	
	8/20(수)	「금주의 서평」 제742호(2025-33호)		
	8/20(수)	[NARS 현안분석 359호]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8/19(화)	중국	중국 하이난성(海南省) FTP(Free Trade Port)의 나비효과와 시사점
8/21(목)	지적재산권	2025년 개정 특허법상 외국인도수출과 그 특허침해 가능성
8/22(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8. 6. - 2025. 8. 19.)
8/22(금)	건설/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